렌터카 빌릴 때 '면책금 폭탄' 주의보

교통 사고시 렌터카 사업자 할증보험료 소비자가 대신 지불 최근 4년간 소비자 피해 427건…경중 없이 일괄 배상 26.5% 소비원 "계약서 약과 꼬꼬히 따지고 자기차랴비현 가인해야"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교통사고의 경중을 고 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427건이었다. 이중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렌터카 사고 의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렌터카 사업자의 보험 할증료 부담분을 소비자가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 합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 면 사고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 용하도록 돼 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면책금

요구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게 소비자원 측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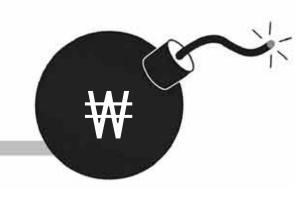
렌터카 업체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원(4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150만원(6.2%) 순이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거부로 피해를 봤다(26.5%)는 소비자도 많았다.

사용 개시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 정액을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타다 피해 를 본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의 과다한 배상 요구(15.0%)와 더불어 보험처리 거절(6.8%), 남 은 연료대금 정산거부(4.9%), 하자로 사용 불가 능(4.7%)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대해 배상이 진행된 경우 는 44.5%로 절반에 못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조항이 있는 지 예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규정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사고를 대비해 추가 비 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기능식품, 동네 슈퍼서도 산다

식약처 판매 규제 완화···사례품·경품 제공도 허용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 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이제 자동판매기를 포함 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교육필 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없어지면서 일반 슈퍼

마켓이나 편의점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수 있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 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민간인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연합뉴스

선풍기 등 '사고 위험' 8종 리콜

국가표준원, 467개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

일부 선풍기와 전기충격 살충기, 유아용 캐리어 등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67개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선풍기 등 8개 품목에 대해 지난 24일자로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선풍기 2개 제품은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채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연된 부분에 전류가 흐르거나 전선 온도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충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 전 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주입식 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가 불충

분했다. 우산 1개 제품은 우산대가 쉽게 부러지고 도금 처리 부위역시 부식을 잘 견디지 못했다.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제품도 나왔다. 붙이는 속눈썹 1 개 제품은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 킬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 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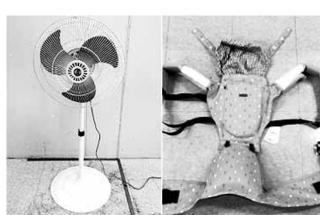
또 다른 속눈썹 1개 제품은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의 97.8배나 검출됐다.

'아기띠'로 불리는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 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배 이상 검출 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 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대형 유통매장 내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할 뿐 아니라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줘야 한 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로 2011년 23.1%였던 여름철 전기용품 부적합률이 2012년 16.5%, 지난해 6.2%, 올해 상반기 4. 9% 등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콜명령 받은 선풍기와 유아용 캐리어.

인터넷 거래 의약품 '위험'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등 4종 가짜"

"흔한 아스피린이라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절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안전하지도 않아 자칫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당국이 인터넷 불법 의약품 구매의 위험 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웹진 '열린마루'(2014년 7월호)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4개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 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2 배 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가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국가마다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이런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위반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포털사를 통해 지난해 불법 의약품판매 사이트 1 만3542개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조처했다.

특히 이중 51개 사이트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외국에 서버를 둔 278개 사이트는 경찰청과 인터폴에 폐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